

『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
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입니다.

먼저 『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

- 지금부터
『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조례안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『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』 등
대부분의 서울특별시 조례상 청년 연령은
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,
일자리 분야의 경우 시민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

현행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는
청년 연령을 34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로 인해 취업에 재도전하는 청년(35~39세)이나
경력 단절 여성 및 만학도 등
다양한 청년층이 제도 밖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상입니다.

또한 정책 간 연령 기준 차이는
시민 혼란과 형평성 저해를 유발하여
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- 이에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
정책 간 통일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,
무엇보다 청년층 수요가 특히 높은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
정책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고자 합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